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한신 의원 외 24명

나. 의안번호: 제2544호

다. 발의일자: 2025. 3. 31.

라. 회부일자: 2025. 4. 2.

2. 제 안 사 유

-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인해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
이를 위해 양방향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 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또한, 급속충전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관련 규정(제7조의4제3항) 중 ‘전체 충전 시설’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,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축소함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,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).
- 나.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명시(안 제7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).
- 다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(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).
- 라. 당연직 위원을 환경, 에너지업무 관련 실·본부 국장에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향 조정(안 제9조제2항제1호).
- 마.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 삭제 및 회의 개의 규정 변경(안 제9조제4항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 주차대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,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7조의2는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·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.

이는 현재 양방향 충·방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관련 기술 수준이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¹⁾에서 조례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임.

- 현행 제7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공중이용시설과 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급속충전시설의 수를 ‘전체 충전시설’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‘전체 충전시설’이 실제 설치 수량과 의무 설치 수량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음.

〈개정안 주요 내용(안 제7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)〉

현 행	개정안
1.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: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	1.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: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 의 100분의 10 이상
2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 건물과 주차장: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	2.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 건물과 주차장: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 의 100분의 10 이상

1)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키운다(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, '24.01.30)

따라서 안 제7조의4와 같이 ‘전체 충전시설’을 ‘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
수량 최소치’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
판단됨.

-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 운영에 있어서 필요시
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는 등 비상설로 전환하는
것임.

이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‘2024년 위원회 정비
및 운영 개선계획’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·유연성 증대 측면에서
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